

# 학생상담실 운영규정

(제명변경 2011.7.14.)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생상담실(이하"상담실"이라 한다)의 역할과 기능,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역할)** 상담실은 학생들의 교내·외 생활에서 일어나는 제반 고충사항의 상담 및 문제해결에 필요한 조언과 지도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대학생활과 성공적인 사회활동을 준비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.

**제3조(기능)** 본 상담실은 이 규정 제2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개인상담, 집단상담, 온라인 상담을 통한 학생지원 활동
2. 각종 심리검사
3. 특강, 세미나 및 진로지도
4. 기타 관련사업

**제4조(구성)** ①본 상담실에는 상담실장을 두며, 상담실장은 학생복지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
②본 상담실에는 전임상담원, 상담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**제5조(상담원 자격)** 본 상담실 상담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전임상담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상담 및 심리검사 수행에 적격한 자
2. 상담보조원은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적격한 자

**제6조(임무)** ①상담실장은 상담실을 대표하고 그 운영을 총괄한다.

②상담원은 상담실장의 명을 받아 상담업무를 수행하며, 상담보조원은 상담원의 업무를 보조한다.

**제7조(위원회)** 상담실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학생복지 및 지도위원회가 담당한다.

**제8조(위원회 회의)**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9조(기타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.(제명변경 및 개정)